

2023학년도 2학기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 생활관 오리엔테이션



전북대학교:





목차(Contents)

- 1. 생활관 소개
- 2. 입주 중 생활 안내
- 3. 생활관 수칙 및 상·벌점



1 생활관 소개

JEONBUK NATIONAL UNIVERSITY
RESIDENCE HALL



전북대학교:





가. 관장 및 부관장

∘ 생활관장



김정자 (공과대학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교수)

∘ 분관장(특성화캠퍼스)



조민 (환경생명자원대학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 부관장



이덕진 (공과대학 기계설계공학과 교수)



김지환 (예술대학 음악과 교수)



유인천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나. 조교 및 층장

◦ 조교 대표: 박 겸

◦ 호관별 조교 및 층장

웅비관, 청운관	
조 교	층 장
박 겸	김주영
	이유나



2 입주 중 생활 안내

JEONBUK NATIONAL UNIVERSITY
RESIDENCE HALL



전북대학교:





가-1. 생활관 이용 안내(공지문, 귀관 시간, 야간 출입 신청, 외박 신청)

구 분	직영 생활관
ТЕ	웅비관, 청운관
공 지 문	○ 생활관에서 입주생이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은 공고문으로 안내하며, 생활관생은 공고나 방송, 안내문(SNS포함), 홈페이지 및 기타 게시물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입주생들은 매일 1회 각 호관 1층 게시판 또는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내용을 확인
	매일 23:50까지 입실
귀관 시간	[23:50~04:30 출입 내역이 있을 경우 출·입시 마다 매회 벌점 1점 씩 부과되며, 벌점 누적으로 강제 퇴관 될 수 있음] Ex) 하루 15회 출·입 기록이 있다면 벌점 15점으로 강제퇴관 대상
	생활관 홈페이지 → 생활 안내 → 서식 다운로드 → 야간 출입 허가 신청서 출력
	○ 학부생
 야간 출입	- 야간 출입이 필요할 때마다 사유 및 기간(1회 1달)을 명시한 야간 출입 허가 신청서 를 작성하여
신청	단과대학장의 공문으로 제출(지도 교수 의견과 서명 필수)
	○ 대학원생
	- 야간 출입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생활관 행정실에 직접 제출(지도 교수 의견과 서명 필수)
	- 호관이 바뀌는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함.
】 외박 신청	○ 생활관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조회 → 외박 대장 작성
47 6	외박 당일 22:00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미 기재 시 무단 외박 처리됨.





가-2. 생활관 이용 안내(장기 외박, 강제 퇴관)

구 분	직영 생활관
TE	웅비관, 청운관
장기 외박	1. 개인적인 사유인 경우 - 외박 대장만 작성(장기 외박 시 조교에게 신고 필수) 2. 공식적인 사유인 경우 - 공식적인 학사 일정, 기타 공적인 사유 발생[교생 실습, 농활, 현장 실습, 해외 봉사 등] 및 병원 입원 - 단,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격리 기간의 경우 5박 이하도 인정(자세한 사항은 행정실로 문의) ○ 신청 방법: 전북대 포털 → 오아시스 → 부속 기관 → 생활관 → 증명 신청 → 장기 외박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본교 기관에서 발급한 공문(공적인 사유) 또는 입원 확인서(병원 입원)를 행정실에 제출 - 최소 2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끝난 후에는 신청 불가
강제 퇴관	 ○ 전북대학교 생활관생 수칙 제18조(강제 퇴관)을 참고하여 강제 퇴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람. (전북대학교 생활관 홈페이지 → 생활 안내에서 생활관 규정, 운영 세칙 및 생활관생 수칙 확인) ○ 강제 퇴관 시 재학 중에는 재 입주할 수 없음. (강제 퇴관 당시 학번으로 졸업까지 입주 불가)





가-3. 생활관 이용 안내(인원 점검, 호실 점검, 조교실 위치, 입주 및 납입 확인서)

구 분	직영 생활관
T 正	웅비관, 청운관
인원 점검	○ 일반 인원 점검: 22:00 이후부터 실시, 인원 점검 불참 시 벌점 부여. 단,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 ○ 특별 인원 점검: 학기 당 1~2회 이상 실시, 불참 시 벌점 부여. 공고문 게시 예정
호실 점검	○ 안전 관리 및 화재 예방(반입금지 물품 점검)과 시설물 점검, 청소 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 호실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벌점 부여 및 필요에 따라 퇴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각 호관 조교	 ○ 조교 근무시간: 평일(월~금) 21:50 ~ 23:50,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조교 업무 - 생활관생 지도 및 상담(불편 사항 상담 등), 상·벌점 문의, 강제 퇴관 관리 - 구급 약품 보관, 인원·청소·호실 점검, 냉장고 및 전자레인지 관리 - 기타 생활관 행정실과 연계된 업무 등
조교실 위치 및 연락처	응비관 1층 관리실 063-850-0624 ※ 모든 호관 조교실은 근무 시간에만 통화 연결이 가능합니다.
입주 및 납입 확인서	○ 전북대 포털 → 오아시스 → 생활관 → 증명 신청 →생활관 입주 및 납입 확인서 신청 후 생활관 행정실에 방문하여 입주 확인서 수령(각 호관 담당자에게 요청)





나. 중도 퇴관 안내

구 분	직영 생활관
TE	웅비관, 청운관
신청 방법	○ 퇴관 원서 작성 → 관리 사무소 방문 → 물품 체크 및 청소 점검 후 퇴관 원서 제출
퇴관 원서	○ 전북대학교 생활관 홈페이지 → 생활 안내 → 서식 다운로드 → 퇴관 원서 다운로드 후 자필 작성
환불 규정	○ 관리비: 중도 퇴관 시에는 전체 잔여 일수 중 퇴관일 다음날로부터 10일치 금액을 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 / 단, 방학 중 단기 잔류자(30일 이하 입주자), 계절 수업 및 특별 학기 등을 위해 입주한 생활관생이 중도 퇴관할 경우에는 관리비를 환불하지 않음.
참고 사항	 □ 물품 파손 시 변상 후 퇴관 하여야 하며, 입주 시와 동일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입주 중 시설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변상 대상이 됨.) □ 호실에 비치되어 있는 공유기를 분실하였을 경우 해당 호실 입주자들이 공동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입주 제한될 수 있음. □ 생활관 행정실에서 퇴관 원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환불 □ 퇴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도에 무단 퇴관하는 자는 입주 제한 될 수 있음. □ 학기 중 중도 퇴관할 경우 해당 학기에는 재 입주 할 수 없음.





다. 난방 및 온수 공급 시간 안내

B	O (1) 71 71	운영시간	
구 분 운영 기간 	웅비관,	청운관	
		06:00~	10:00
온 수	개관 기간 중	18:00~	24:00
	※ 온수 사용량과 기온에 따라 온수 공급 시간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03:00~04:40
		웅비관	18:30~20:10
	전반기		22:40~23:30
(3월 1일~4월 30일) 난 방 후반기 (10월 20일 ~익년 2월 휴관일까지)	○ 청운관은 개별 난방이므로 본인이 보일러 작동 ○ 웅비관 난방 시간은 기온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 난방 중에는 창문을 닫아서 보온을 유지		





라. 특성화캠퍼스 학생 식당 이용 시간 안내 (위치: 중앙도서관 지하)

구 분	식 사 시 간 : 월 ~ 금요일 (공휴일 휴무)		
	학 기	방 학	
아 침	운 영 안 함		
점 심	11 : 40 ~ 13 : 20	11 : 50 ~ 13 : 00	
저 녁	운 영 안 함		
참고사항	○ 식사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함		





마. 특별 유의사항

- 전열 기구, 취사 도구 반입이 불가하며, 적발 시 강제 퇴관 조치될 수 있음
- 외부인을 대동하여 호실 내 출입 시 벌점 10점, 이성 대동 시 강제 퇴관 조치됨
- 분리 수거를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 복도에는 개인 물품(우산, 바구니 등)을 놓을 수 없음(소방법 위반 사항)
- 2개월마다 실시되는 방역 소독 시 각 호실을 방문하므로, 의복을 꼭 착용하고 소지품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생활관 행정실에서 호관 공지문 뿐만 아니라 문자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으니, 오아시스에 본인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 바람
- 생활관 수칙 개정 진행 중으로, 확정 후 문자 안내 및 호관 안내문 공고 예정이니 참고 바람





바. 불편사항 신고

구 분	직영 생활관
	웅비관, 청운관
시설 및 기타 문의	행정실 및 관리실 063 - 850 - 0624



3 생활관 수칙 및 상 · 벌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RESIDENCE HALL



전북대학교:





가. 생활관 6대 강조사항

6대 강조사항

01

건물 내 음주 절대 금지

생활관 호실 내에서는 음주 행위는 절대 금지

02



건물 내 흡연 절대 금지

생활관 호실 내에서는 흡연 행위는 절대 금지

03



호실 내 취사행위 절대 금지

호실 내에서는 취사행위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지 사항

04



생활관 기계설비 등 조작 금지

관리자의 허락 없이 생활관의 기계설비 등은 조작 금지 사항

05



호실 내 청결유지(청소)

룸메이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호실 내 청결 유지

06



생활관 내 밤 늦게 떠드는 행위 금지

단 관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금지 사항





[전문: 생활관생 수칙 | 전북대학교 생활관 (jbnu.ac.kr)]

① 상점

상점내용	점수
1. 행복드림센터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단, 학기 당 1회만 인정, 외국인 포함)	
2. 입주 후 해당 학기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생활관으로 이전한 자. 단, 1, 2학기 중 1회만 반영한다.	1
3. 일반 관생이 HRC센터 프로그램 참여시(단, 학기당 2회만 인정)	
4. 응급 상황 신고자 및 간병 등 봉사	3
5. 생활관에서 주관하는 <u>각종 행사</u> (화재대피훈련 등) 참여자	
6. 생활관 내 봉사 활동에 참여한 자	1~3
7. 생활관 공공 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1~3
8.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생활관으로 이전한 자 (단, 1,2학기 2중 1회만 반영한다.)	5





개정 전	개정 후	점수
1.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3회 이상 외박하거나 입·출입 시간 외에 지연 출입하는 자	1.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3회 이상 외박하거나 입·출입 시간 외에 지연 출입하는 자	
2. 인원 점검 불참	2. 인원 점검 불참	1
3. HRC센터 관생 중 프로그램 1회 당 미참여자 (단, 프로그램명 및 참여 여부는 HRC센터에서 따로 정한다.)	3. 삭제	
4. 방화 구역 및 응급 상황 시 비상 대피로로 활용될 수 있는 구역에 물품 적치	3. 방화 구역 및 응급 상황 시 비상 대피로로 활용될 수 있는 구역에 물품 적치	
5. 개선 요구에 불응한 청소 상태 불량 (호실 내 전원 벌점 부과)	4. 개선 요구에 불응한 청소 상태 불량 (호실 내 전원 벌점 부과)	
6. 소란이나 소음(악기 연주, 층간 소음 등)을 일으킨 자	5. 소란이나 소음(악기 연주, 층간 소음 등)을 일으킨 자	2
7. 호실 내 욕실화 및 신발 착용	6. 호실 내 욕실화 및 신발 착용	
	7. 생활관 공용 시설물(체력 단련실) 사용 수칙을 위반한 자	





개정 전	개정 후	점수
8. 호실을 임의로 변경한 자(관생 간 합의 시에도 임의 변경 불가)	8. 호실을 임의로 변경한 자(관생 간 합의 시에도 임의 변경 불가)	
9. 교직원에 대한 불손 행위(폭언 등)나 직원의 호실 점검과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행위	9. 교직원에 대한 불손 행위(폭언 등)나 직원의 호실 점검과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행위	
10. 공고문 훼손	10. 공고문 훼손	
11. 월 10회 이상 상습적인 외박	11. 월 10회 이상 상습적인 외박	
12. 반려 동물 단순 반입 행위	12. 반려 동물 단순 반입 행위	
13. 실내 외 구토, 노상 방뇨 및 오물 투기 행위	13. 실내 외 구토, 노상 방뇨 및 오물 투기 행위	
14. 분리 수거를 위반하는 행위	14. 분리 수거를 위반하는 행위	3
15. 생활관 내의 시설물이나 비품을 고의 및 과실로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이동시킨 자	15. 생활관 내의 시설물이나 비품을 고의 및 과실로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이동시킨 자	
16. 공고나 방송, 안내문(SNS 포함), 홈페이지 및 기타 게시물의 지시 사항 위반	16. 공고나 방송, 안내문(SNS 포함), 홈페이지 및 기타 게시물의 지시 사항 위반	
17.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스마트 모빌리티(전동 킥보드 등) 등을 주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17.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스마트 모빌리티(전동 킥보드 등) 등을 주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18. 생활관 관할 구역 내 지정되지 않은 실외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개정 전	개정 후	점수
18. 자정(24시)이후 세탁기를 이용하는 행위	<u>19.</u> 자정(24시)이후 세탁기를 이용하는 행위	4
19. 생활관 식사카드를 <u>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u>	20. 생활관 식사카드를 대여·양도하는 행위 및 급식 대상자가 아닌 자를 데리고 와서 도식하는 행위	
20. 폭행, 음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자	21. 폭행, 음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자	
21. 비상문 또는 출입문이 아닌 곳으로 출입하거나 출입을 시도하는 행위	22. 비상문 또는 출입문이 아닌 곳으로 출입하거나 출입을 시도하는 행위	5
22.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 놓거나 <u>타인의 생활관</u> 출입을 방조하는 행위	23.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 놓거나 외부인의 호관 출입을 방조하는 행위	5
23. 생활관에서 주관하는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24. 생활관에서 주관하는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호실 점검, 인원 점검 등)	
24. 고성방가 및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5. 고성방가 및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5. 동성(同姓)의 <u>외부인 또는 타 호실 입주자의 숙박 또</u> 는 출입 방조 행위	26. 동성(同姓)의 외부인(타 호관 학생 포함)과 출입 및 숙박하는 행위	10
	27. 외부인의 호실 출입 및 숙박을 방조하는 행위	





개정 전		개정 후		점수
26. 공동 생활에 부적합한 물품의 반입 또는 사용한 행위		28. 공동 생활에 부적합한 물품의 반입 또는 사용한 행위		
반입 허용 물품	반입 불가 물품	반입 허용 물품	반입 불가 물품*	
컴퓨터, 선풍기, 라디오, 스탠드, 헤어 드라이기, 고데기, 소형 청소기, 소형 생활필수품	반입 가능 품목 외 모든 <u>전자 제품</u> , 전열 기구, 취사 도구(취사 행위 금지), <u>인화 물질 무단 반입</u> , 공동 생활에 부적합한 물품	컴퓨터, 선풍기, 라디오, 스탠드, 헤어 드라이기, 고데기, 소형 청소기, <mark>전기 면도기</mark>	반입 가능 품목 외 모든 전기·전자 제품, 전열 기구, 취사 도구(취사 행위 금지), 주류 일체, 공동 생활에 부적합한 물품	
※ 생활관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필수 가전제품을 제외한 전자제품 일체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음 ※ 학과, 동아리 물품 등 본인의 물품이 아니더라도 반입 및 보관 자체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짐 ※ 반입 불가 품목을 반입하거나 보관할 경우 벌점 누적으로 강제 퇴관 조치가 이루어지니 해당 항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으시기 바람 ※ 건강상의 이유로 반입 불가 품목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실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반입이 가능함		* 예시: 공기 청정기, 전자레인지, 캔들 워머, 전기 난로, 전기 장판, 전기 밥솥, 전기 포트, 쿠커, 칼, 캔들, 향초 등 ※ 생활관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반입 허용 물품을 제외한 일체의 전기·전자 제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음 ※ 학과, 동아리 물품 등 본인의 물품이 아니더라도 반입 및 보관 자체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짐 ※ 반입 불가 품목을 반입하거나 보관할 경우 벌점 누적으로 강제 퇴관 조치가 이루어지니 해당 항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으시기 바람 ※ 질병상의 이유로 반입 불가 품목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실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반입이 가능함		10
27. 기타 생활관 입주자로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여 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자		29. 기타 생활관 입주자로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여 부적 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③ 강제 퇴관

강제퇴관 사유

- 1. 학기당 벌점이 15점 이상인 자. 다만, 1,2학기 계속 생활하는 관생은 누적 벌점이 20점 이상인 자
- 2. 방학 기간 중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
-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 가. 화재를 일으키거나 관내로 인화물질(휘발유, 부탄가스 등)을 반입하는 행위
- 나. 타인을 폭행하거나 심각한 위협을 한 행위
- 다. 생활관 내부(호실, 복도, 건물 발코니 포함)에서 흡연, 음주 및 도박을 한 행위
- 라. 이성 동반 생활관 출입 또는 이성 거주 생활관에 출입하거나 숙박한 자
- <u>마.</u> 대리로 입주(명의 제공 포함)한 자
- <u>바.</u> 성 관련 비위(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를 저지른 경우
- 사. 고의로 공유재산인 네트워크 환경을 유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 아. 고의로 관내 시설물(비상출입문 포함)을 손괴하는 행위
- 자. 반려동물 사육행위
- 차. 절도행위
- 4. 학적 상실(제적·수료·졸업)자, 휴학자
- 5. 퇴관 절차 종료 후 호실 무단 점유
- 6. 그 밖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자





④ 입주 제한

입주제한 사유

- 1. 퇴관 시 호실 청소 및 정리 정돈 불이행한 자
- 2. 퇴관 시 시설물 및 지급 물품 파손 자
- 3. 전북대학교 재적생 중 생활관에 무단 침입한 자
- 4. 전북대학교 재적생 중 생활관에서 소란 행위 및 기타 공동 생활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자
- 5. 결핵 진단서 미제출자
- 6. 그 밖에 공동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자





다. 화재대피 및 합동 소방 훈련



매년 3,9월 비상 시 행동요령,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 예방교육, 가상의 화재 상황 설정 후 대피훈련



매년 5월 지진 및 화재 경고, 대피 훈련, 화재 초기 진압 훈련, 중요 위험물 반출 및 위험물질 제거훈련, 자위소방대 임무 숙지 훈련, 소방서와 자율방법대원 의 합동 화재 진압 훈련 실시





라. 비상 시 행동요령









라. 비상 시 행동요령



국민행동요령 화재



화재진압

■ 소화기 사용법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밖으로 대피 할 때를 대비하여 문을 등지고

- 1. 소화기를 가져와서 몽롱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 2. 노출을 잡고 불쪽을 함해 가까이 이동한다.
- 3. 손잡이를 꽉 움켜쥔다.
- 4, 분말이 골고루 불을 덮을 수 있도록 쏩니다.

■ 소화전 사용법







2인 1조로 사용합 경우

- 1, 2명 중 1명이 먼저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호스와 노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 2. 호스를 밖으로 꼬이지 않도록 붉이 난 곳까지 길게 늘어뜨린 후 노즐(관칭)을 잡고 방수자세를 취한다.
- 3, 다른 한사람이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 한 후 뛰어가서 호스를 잡는 것을 도와줍니다.
- 4, 노출의 끝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가며 불을 끕니다.

■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설균 화상방지와 연기가 베로 들어가지 압도록

- 1,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 2, 얼굴(눈, 코, 입)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두 손으로 감싸도록 합니다.
- 3, 바닥에 엎드린 후
- 4, 몸을 장군어서 불이 꺼지도록 합니다.





라. 비상 시 행동요령







감사합니다

JEONBUK NATIONAL UNIVERSITY
RESIDENCE HALL